

<이스트스프링 물가 따라잡기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- 정정사항>

정정사유:

- 1) 최근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운용실적 등 관련 수치 변경
- 2) 투자위험등급 관련 수익률변동성 재측정
- 3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8.9.28, 2019.1.15 시행)

정정사항:

정정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관련 수익률변동성 재측정	<u>수익률 변동성: 0.73%</u>	<u>수익률 변동성: 0.73%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가. 의무해지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8.9.28 시행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(1) ~ (4) <생략>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(1) ~ (4) <현행과동일>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3. (2) 자산운용보고서	자본시장법 시행령	▪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	▪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

	개정사항 반영 (2019.1.15 시행)	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<이하생략>	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</u>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<이하동일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